

목 차

Contents

I	2018년도 주요 투자 및 신규사업 현황	1
II	주요사업 설명서	4
①	특별교통수단 운영	5
②	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	9
③	저상버스 도입보조	13
④	대용량버스(2층버스) 도입 지원	16
⑤	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	20
III	신규사업 설명서	26
①	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	27

【 대상사업 】

◆ (선정기준) 교통국 소관 핵심 쟁점사업

※ 道 예산담당관-10804호 「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운영기준」 관련
: 실국별 재정건전성 강화 및 도의회 ↔ 집행부간 협력적 재정운용 도모

□ 총 괄

(단위:백만원)

부 서	주요 투자 및 신규사업	'18년 소요예산액	비고
교 통 국	6건	112,779	
교통정책과	1건 (투자 1)	10,364	
버스정책과	2건 (투자 2)	70,315	
굿모닝버스추진단	2건 (투자 1, 신규 1)	31,100	
택시정책과	1건 (투자 1)	1,000	

□ 주요 투자사업 현황

(단위:백만원)

연번	부서명	핵심사업명	예산액(국비+도비)			비고
			'17	'18	증감	
	교 통 국	5개 사업	81,003	96,679	15,676	
1	교통정책과	특별교통수단 운영	7,645	10,364	2,719	
2	버스정책과	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	56,015	56,015	0	시군세입포함
3	버스정책과	저상버스 도입보조	6,843	14,300	7,457	국고보조포함
4	굿모닝버스 추진단	대용량버스(2층버스) 도입 지원	10,500	15,000	4,500	
5	택시정책과	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	0	1,000	1,000	

□ 신규사업(30억 이상) 현황

(단위:백만원)

연번	부서명	핵심사업명	예산액(국비+도비)			비고
			'17	'18	증감	
	교 통 국	1개 사업	0	16,100	16,100	
1	굿모닝버스 추진단	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	0	16,100	16,100	시군세입포함

□ 주요 투자사업 사항별 설명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사 업 개 요	'18년 예산
① 특별교통수단 운영	○ 필요성 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시·군 지원 확대 필요 ○ 사 업 량 :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(31개 시군) ○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(2018년) ○ 총사업비 : 672억원(도 104, 시군 568) ○ 기대효과 :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경제활동,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모함	104
②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	○ 필요성 -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비수익 적자노선 등 운행 유지 필요 ○ 사 업 량 : 시내버스 61개 업체('17. 1. 1. 기준) ○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(2018년) ○ 총사업비 : 560억원(도 168, 시군 392) ○ 기대효과 :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 및 서비스 제공, 교통비 부담 경감	560
③ 저상버스 도입보조	○ 필요성 - 도 지원비율 상향(7.5→15%)을 통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친환경(전기, CNG버스) 대중교통수단 확충 필요 ○ 사 업 량 : 저상버스 220대 ※ 최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○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(2018년) ○ 총사업비 : 220억원(국 110, 도 33, 시군 77) ○ 기대효과 : 장애인, 노약자 등 이동편의 증진으로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제고	143
④ 대용량버스(2층버스) 도입 지원	○ 필요성 -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대용량 수송이 가능한 2층버스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나 고가의 차량 가격으로 도입에 어려움, 2층버스 확대 도입을 위해 도비 지원 필요 ○ 사 업 량 : 2층버스 100대 구입비 지원 ○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(2018년) ○ 총사업비 : 450억원(도 150, 시군 150, 기타 150) ○ 기대효과 : 2층버스는 광역버스 이용객의 입석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출퇴근에 기여	150

사 업 명	사 업 개 요	'18년 예산
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	○ 필요성 -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업계 자율 경쟁 유도 ○ 평가대상 : 법인 194개 업체, 개인 32개 지부 ○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(2018년) ○ 사 업 량 : 평가결과 우수 법인 30개 업체, 개인 10개 지부 ○ 총사업비 : 10억원(전액 도비) ○ 기대효과 -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로 택시서비스 질 향상 및 도민 만족도 제고	10

□ 신규사업 사항별 설명

사 업 명	사 업 개 요	'18년 예산
①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	○ 필 요 성 : 수도권 광역교통 입석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 필요 ○ 사 업 량 : 12개 단기 시행 시군, 직행좌석버스 33개 노선 - 인면허 보유 시군 : 7개 시(안산, 안양, 시흥, 파주, 김포, 포천, 양주) - 노선경유 시군 : 5개 시(부천, 의정부, 군포, 의왕, 과천) ※ 참여 의사 표명 23개 시군 중 단기(17년말~) 시행 희망 12개 시군 확정(17. 6월) ○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(2018년) ○ 총사업비 : 161억원(도 80.5, 시군 80.5) ○ 기대효과 : 수도권 광역교통 입석문제 해결 및 안전운행 여건 마련	161

II . 주요사업 설명서

특별교통수단 운영(자체/지원)	정책사업	교통정책기반조성
	단위사업	교통안전제고
	기준보조율(%)	도 10~20, 시군 80~90
	위원회명	건설교통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7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67,156,119	(39,060,000)	(43,886,000)	(43,886,000)	0	67,156,119	27,270,119		
국 비									
도 비	10,364,000	(4,123,170)	(7,645,000)	(7,645,000)		10,364,000	2,719,000		
시군비	56,792,119	(34,936,830)	(36,241,000)	(36,241,000)		56,792,119	20,551,119		
기 타								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30억이상 신규사업 사전협의
반영예정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7.10월							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

(기준 : '17. 6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일 자		도직접	재배정	시군 보조	
계	15,116,170	14,647,722	14,647,722		97				
2015년	3,348,000	3,096,722	3,096,722	'15.6.22	92			○	
2016년	4,123,170	3,906,000	3,906,000	'16.6.25	95			○	
2017년	7,645,000	7,645,000	7,645,000	'17.6.28	100			○	

○ '17년 추진 실적 :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

○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우수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교통국	교통정책과	교통복지팀	강승호 (8030-3710)	정규창 (8030-3731)	이동욱 (8030-3032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교통약자에게 경제활동,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토록 특별교통수단 제공

2) 사업 근거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
-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

3) 사업 집행절차

○ 보조금 내시(12월) → 자금교부(3월) → 추진상황 점검(상시) → 결산(2월)

4) 사업 내용

- 사업 기간 : 2017. 1월 ~ 12월
- 사업 량 :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(31개 시군)
- 사업시행주체 : 시장·군수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: 해당없음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 고 (증감)
계			10,364,000	7,645,000	2,719,000
자치단체경 상보조	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영비	시·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67,156,119천원 - 정액보조 10% : 6,715,612천원 - 광역이동 시군 10% 추가 : 3,648,388천원	10,364,000	7,645,000	2,719,000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·문제점 및 대책

- 1) 도의회 행정사무감사
 - 2015년 : 법정대수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비율(현재 10%) 확대 및 미이행에 대한 제재 요건 강화
 - 2016년 :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이상 확보 노력 강구
- 2) 국정감사
 - 2014년 :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을 제고할 것
 - 2015년 : 열악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법정대수 만큼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할 필요
 - 2016년 :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편차 해소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전용	변경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	본예산	추경증감								
2015	3,348,000					3,348,000	3,096,722	92.4%	0	251,278
2016	3,906,000	217,170	0	0	0	4,123,170	4,123,170	100%	0	0

9) 주요 결산사항 : 해당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:

○ 2017년 전북 3,733백만원 지원

11) 기타 보충자료 : 특별교통수단 현황

□ 사업개요

- 총사업비 : 67,156백만원(도비 10,364, 시군비 56,792)
-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: '18. 1월 ~12월
 - 지원대상 : 시·군 특별교통수단
 - 지원내용 :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비용
- 세부산출내역(도비)
 - 시·군 운영비의 10%지원 : 6,716백만원
 - 광역이동 만족시군 추가 10%지원 : 3,648백만원

□ 추진상황

- 운영대수 : 626대(법정대수 558대 대비 112%)
- 도비 지원(2017년) : 107억원
 - 도입비 : 6,720백만원(도비 3,084, 시군비 3,636)
 - 운영비 : 43,886백만원(도비 7,645, 시군비 36,241)
- 장애인단체 협의 사항('16. 6. 18.)
 - 2018년까지 법정대수의 200%(1,116대) 도입 지원
('16년 140%, '17년 170%, '18년 200%)
 - 운영비 지원 : 기본 10% 지원 + 광역이동 만족시군 10%

□ 예산반영 필요성

- 반영 필요성
 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·군 지원 확대 필요
- 미반영시 문제점
 - 장애인단체와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

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(자체/직접)	정책사업	대중교통인프라확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지원
	단위사업	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	기준보조율(%)	도 30, 시군 70
	위원회명	건설교통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[illegible]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잔액		도직접	재배정	시군보조	
계	187,586,488	124,959,179	0		67				
2015년	65,785,496	64,402,203		‘15.12.23.외	98		○		
2016년	65,785,496	56,474,486		‘16.12.26.외	86		○		
2017년	56,015,496	4,082,490		‘17.6.15.외	7		○		

- '17년 추진 실적 : 매월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 보전('16.12~'17.5월분, 56,763천 건)
-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정상추진
 -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 보전(매월), 시설개선키워드(하반기), 벽지노선 지원(12월), 용역 후 운영개선키워드(12월) 집행 추진

□ 사업 담당자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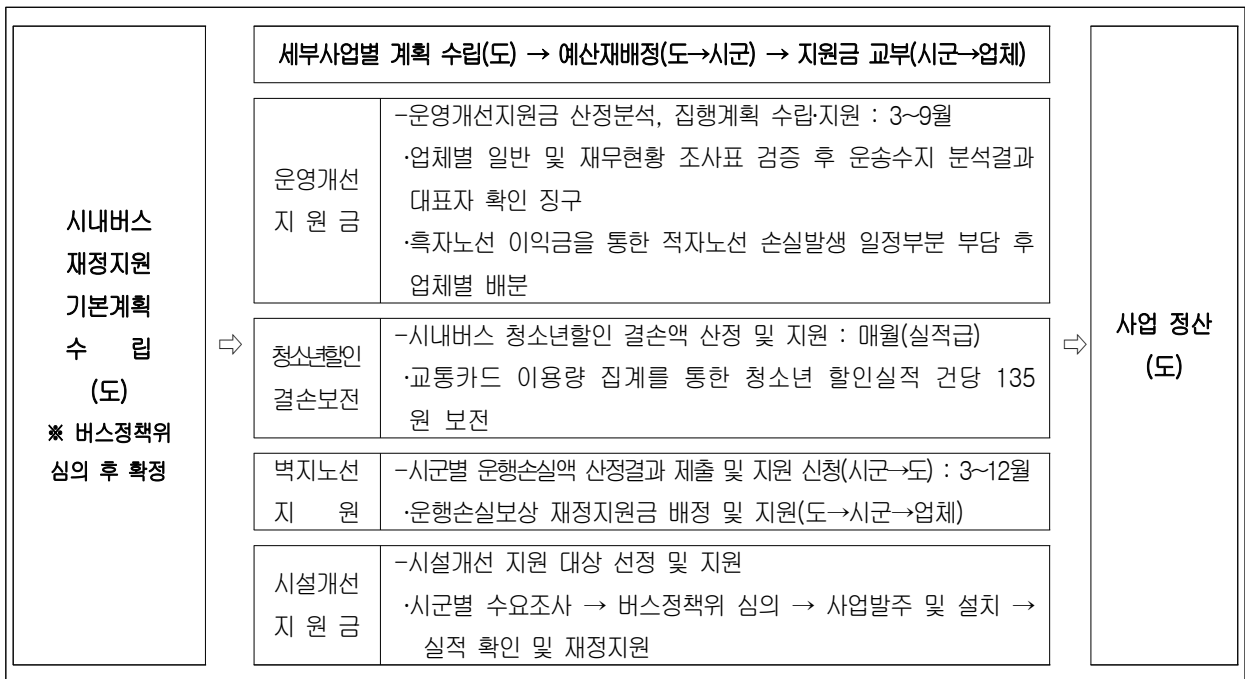
1) 사업 목적

-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비수익 적자노선 운행 유지 및 도민의 교통비용 부담 경감

2) 사업 근거

- 운영개선지원금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(재정지원)
-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,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
- 벽지노선 지원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
- 시설개선지원금 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

3) 사업 집행절차



4) 사업 내용

- 사업 위치 : 경기도 31개 시·군
- 사업 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(2018.1 ~ 2018.12)
- 사 업 량 : 시내버스 61개 업체('17. 1. 1. 기준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경기도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: 해당없음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 고 (증감)
계			56,015,496	56,015,496	0
민간이전 (운수업체 보조금)	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	< 운영개선지원금 > 일반 및 재무현황 용역결과를 통한 시내버스 업체 운송수지에 따라 지원	35,405,496	35,405,496	0
		<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>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액 지원 (건당 135원 지원)	15,180,000	15,180,000	0
		< 벽지노선 지원 > 벽지노선 손실보상 추가지원 (전년도 운행손실액 x 손실보전율) ※ 2017년부터 관련예산 일원화 하여 운영	3,430,000	3,430,000	0
		< 시설개선지원금 > 버스시설개선 ※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	2,000,000	2,000,000	0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

- 1) 도의회 행정사무감사·예결위 지적 및 대책 :
 - 지적 :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산정 시 BMS 미활용 지적('15년 행감)
 - 대책 : 운행기록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버스운송관리시스템(BMS) 기능 개선을 통한 인가 대비 실제운행기록 검증 등 BMS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지원 추진 (BMS를 활용한 버스운행실적 평가계획 보고, 건설교통위원회, '16.5.17)
- 2) 감사원·도 감사관실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3) 언론·민원·시민단체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4)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5)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전용	변경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	본예산	추경증감								
2014	65,785,496		0	0	0	65,785,496	65,755,866	99%		29,630
2015	65,785,496		0	0	0	65,785,496	64,402,203	98%		1,383,293
2016	58,605,496	7,180,000	0	0	0	65,785,496	56,474,487	86%	0	9,311,010

- 전용·변경 사유 : 해당 없음
- 이월액 발생 사유 : 해당 없음
- 불용액 발생 사유 : (2014~2016)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지원금 잔액(실적금)
(2015~2016) 성남시 부담금 미납에 따른 인센티브 등 미지원
(2016) 운송수지 개선(유류비인하, 요금인상 등)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집행잔액 등

9) 주요 결산사항

2014	- 해당 없음
2015	- 해당 없음
2016	- 예산 수립 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용액 최소화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

<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>

- 주 관 : 서울특별시
- 사업 기간 : 2017.1~2017.12
- 예 산 : 1,973억원
- 주요 내용 : 시내버스 체계개편으로 시내버스 운영이 수입금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, 총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 보전

저상버스 도입보조(국비/지원)	정책사업	대중교통인프라확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지원
	단위사업	대중교통 인프라 확대
	기준보조율(%)	국 50 도 15 시군 35
	위원회명	건설교통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7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22,000,000	(5,566,506)	(16,962,308)	(11,900,000)	(5,062,308)	22,000,000	10,100,000	0	
국 비	11,000,000	(2,783,253)	(8,481,154)	(5,950,000)	(2,531,154)	11,000,000	5,050,000		국고보조
도 비	3,300,000	(417,488)	(1,272,176)	(892,500)	(379,676)	3,300,000	2,407,500		
시군비	7,700,000	(2,365,765)	(7,208,978)	(5,057,500)	(2,151,478)	7,700,000	2,642,500		
기 타								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30억이상 신규사업 사전협의
반영예정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7.10월	-	-	-	-	-	-	-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

(기준 : '17. 6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일 자		도직접	재배정	시군 보조	
계	19,294,189	15,899,487	0		82				
2015년	6,340,118	6,340,118		'15.11.20.외	100			○	
2016년	3,200,741	3,200,741		'16.11.2.외	100			○	
2017년	9,753,330	6,358,628		'17.6.15.외	65			○	

○ '17년 추진 실적 : 도입 계획대수 184대 중 120대(65%) 교부 완료 및 도입추진 중

○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정상추진

- 도, 제작사, 운송업체,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원활한 도입추진 중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교통국	버스정책과	서비스개선팀	배상택 (8030-3770)	김천광 (8030-3831)	최기덕 (8030-3832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장애인, 고령화 등 교통약자와 일반 이용객의 대중교통수단 이동 편의증진으로 사회활동 제고

2) 사업 근거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
-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

3) 사업 집행절차

○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(사업계획서 및 버스 구매 계약서 첨부)(업체→시군) ⇒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(국토부↔도↔시군) ⇒ 버스 출고 후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(업체→시군) ⇒ 보조금 지급(시군→버스제작사)

4) 사업 내용

- 사업 위치 : 수원시 등 12개 시군 운송업체 일반 시내버스 등
- 사업 기간 : 2018. 1 ~ 12월
- 사업 량 : 저상버스 220대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대행
- 사업시행주체 : 수원시 등 12개 시군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: 해당 없음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 고 (증감)
계			14,300,000	9,753,330	4,546,670
자치단체등자본이전 (자치단체자본보조)	저상버스 도입 보조	220대×100,000천원/대당×65%	14,300,000	9,753,330	4,546,670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-평가-문제점 및 대책

- 1) 2015, 2016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건교위 지적 및 대책
 - 지적사항 :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대책 강구 및 도비지원 상향 추진
 - 후속조치 : 2016~2017년 저상버스 도입확대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및 도비 지원상향 재정합의 추진
- 2) 2015, 2016년 국정감사 국토·행자위 지적 및 대책
 - 지적사항 : 저상버스 도입부진 및 확대 지원대책 강구 추진
 - 후속조치 : 2016~2017년 저상버스 도입확대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등
- 3) 2016년 장애인 단체 협의 및 대책
 - 협의사항 : 저상버스 국비 확보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 도입 추진
 - 후속조치 : 2017년 저상버스 도입확대 최종수요 조사시 가능한 한 최대 국비 확보추진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전용	변경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	본예산	추경증감								
2014	2,651,562	217,191	0	0	0	2,868,753	2,868,753	100%	0	0
2015	5,787,850	552,268	0	0	0	6,340,118	6,340,118	100%	0	0
2016	5,750,000	2,549,259	0	0	0	3,200,741	3,200,741	100%	0	0

- 전용·변경 사유 : 해당 없음
- 이월액 발생 사유 : 해당 없음
- 불용액 발생 사유 : 해당 없음

9) 주요 결산사항 : 해당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

-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
 - 주 관 : 국토부
 - 사업 기간 : 2018. 1 ~ 12월
 - 예 산 : 국비 50%, 지방비 50% 중
 - 주요 내용 : 강원도 - 도비 : 30%, 시군비 : 20%, 충북, 전북, 전남, 경남 - 도비 : 25%, 시군비 25%, 경북 - 도비 15%, 시군비 35%
 - ※ 경기 도비 : 7.5%, 시군비 42.5%, 충남 - 도비 : 0%, 시군 50%

대용량버스(2층버스) 도입 지원 (자체/지원)	정책사업	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지원
	단위사업	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	기준보조율(%)	도 33.3 시군 33.3 자부담 33.3
	위원회명	건설교통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7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45,000,000	(32,850,000)	(31,500,000)	(31,500,000)	0	45,000,000	13,500,000		
국 비									
도 비	15,000,000	(10,950,000)	(10,500,000)	(10,500,000)		15,000,000	4,500,000		
시군비	15,000,000	(10,950,000)	(10,500,000)	(10,500,000)		15,000,000	4,500,000		
기 타	15,000,000	(10,950,000)	(10,500,000)	(10,500,000)		15,000,000	4,500,000		자부담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30억이상신규 사업사전협의
반영예정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7.10월	-	-	-	-	-	-	-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

(기준 : '17. 6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일 자		도직접	재배정	시군 보조	
계	21,450,000	17,696,400	17,696,400		83				
2015년	2,850,000	2,846,400	2,846,400	'15.6.17. '15.12.14.	100			○	
2016년	8,100,000	8,100,000	8,100,000	'16.3.30. '16.11.23.	100			○	
2017년	10,500,000	6,750,000	6,750,000	'17.3.29.	64			○	

○ '17년 추진 실적 : 도입계획(70대) 수립, 사업비(45대분) 교부 ※ '16년 2단계~'17년 1단계 차량 도입 진행 중

- 2층버스 도입 성과('15년, 19대, '16년 14대) : 도입노선 입석율 평균 45% 감소, 이용자 만족도 78%

○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정상 추진 중(도비 집행률 64%)

- '17년 1단계(45대) 보조 사업자(사군)에 도비 교부(수원 등 8개시)

- '17년 2단계 (25대) 7월중 도비교부 예정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교통국	굿모닝버스추진단	굿모닝버스정책팀	임 성 만 (8030-3620)	김 동 욱 (8030-3621)	조 상 연 (8030-3624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광역버스 입석문제 완화를 위해 수송능력이 뛰어난 대용량 2층버스 도입 필요
- 광역버스 출퇴근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서비스 제공

2) 사업 근거

- 지원근거 :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

3) 사업 집행절차

- 시·군 수요조사('17.7~8월) → 본예산 확정('17.12월)
- 도입계획 수립('18.1월) → 차량 구입 계약 체결(2월 말) → 도로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정비(3월~9월)
→ 차량 도입·운행 준비(9~10월) → 운행 개시(10월~)

3) 사업 내용

- 사업 대상 :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
- 사업 기간 : 2018. 1. ~ 2018. 12.
- 사업 량 : 2층버스 100대 차량 구입비 지원
- 사업시행주체 : 시·군

4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: 해당없음

5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 고 (증감)
계			15,000,000	10,500,000	4,500,000
자치단체등 자본이전 (자치단체 자본보조)	대용량버스 (2층버스) 도입확대	- 2층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 · 450,000천원/대 × 100대 = 45,000,000 (도비 15,000,000, 시·군비 15,000,000 자부담 15,000,000)	15,000,000	10,500,000	4,500,000

6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

1)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
· 건의사항 1) : 2층버스 운행 시 안전대책 마련 요구(악천후 사고대비, 안전매뉴얼 필요) → 동절기 2층버스 교통안전대책 마련·시행('15.12.), 2층버스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·시행('16.3.)
· 건의사항 2) : 장애인단체 집회 관련 대책 마련(2층버스 장애인석 보완) → 기 도입 차량 장애인석 개선(보조석 제거 및 안전봉 위치조정), 도입 예정차량에 대해 장애인석 개선 조치
· 건의사항 3) : 2층버스 예산지원 후 관리감독 체계, 사후관리 개선 요구 → '16.12월 "2층 버스 구매 및 관리 강화 방안" 수립,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성능의 차량 구매, 보조금 관리 강화 등 관리감독 체계 정립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전용	변경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	본예산	추경증감								
2014	해당없음	0	0	0	0	0	0	0	0	0
2015	1,350,000	2,850,000	0	0	0	2,850,000	2,846,400	100%	0	3,600
2016	1,350,000	6,750,000	0	0	0	8,100,000	8,100,000	100%	0	0

9) 결산 주요 지적사항 : 해당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

· 국내사례 : 없음(국내 최초 시행 사업)
· 해외사례 : 영국, 독일, 싱가포르, 홍콩 등 첨두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버스에 대용량 2층버스 도입운영

11) 기타 보충자료 : 2층버스 도입 사업 추진 현황

□ 사업 개요

- 도입대수 : 423대('15년 19대, '16년 54대, '17년 70대)
 - ※ 광역버스 2,083대 중 20%를 2층버스로 교체('16. 5. 경기연구원 연구결과)
- 사업내용 : 2층버스 구입비(4.5억 원) 일부 지원(1.5억 원)
 - ※ 도 : 시군 : 운수업체 = 1 : 1 : 1 부담
- 총사업비 : 1,903.5억 원 (도비 634.5, 시군비 634.5, 자부담 634.5)
 - ※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근거

□ 추진현황

- '15. 2. : 2층버스 도입 기본계획 수립
- '16. 5. : 2층버스 연차별 확대도입 계획 수립
- '16. 11월 : 2층버스 비수요시간대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
- '16. 12. : 2층버스 구매 및 관리 강화 방안 수립
 - 차량 매각·양도 기준 정립, 표준구매절차 도입
 - ※ '16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사업자선정 공정·투명성, 차량관리 등) 반영
- 현재까지 2층버스 33대 운행 중, '17년 110대 순차 도입

< 시군별 2층버스 도입 추진 현황 >

구 분	합계	수원	안산	남양주	파주	김포	용인	하남	화성	기타	도입시기
합 계	143	25	6	13	11	32	14	6	2	34	
'15년	19	2	-	5	-	12	-	-	-	-	'15. 10~'16. 12.
'16년	1단계	9	1	2	1	4	-	-	-	-	'17. 3월~5월.
	2단계	45	7	3	2	7	6	4	1	9*	'17. 9.
'17년	70	15	1	5	3	10	8	2	1	25**	'17. 12.

* 9대 : 고양 2, 광주 2, 성남 3, 시흥 2

** 25대 : 2차 수요 조사 후 추진

□ 도입 효과

- 2층버스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·퇴근에 기여
 - 2층버스 도입 노선의 입석율 평균 45% 감소, 이용자 만족도 78% 만족, 타지역 노선확대 87% 공감, 운송비용 92%(CNG) ~ 110%(경유) 수준, 운송수입 등 고려시 경제성 우수

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(자체/직접)	정책사업	택시정책 기반 조성
	단위사업	택시서비스 기반 조성
	기준보조율(%)	도 100
	위원회명	건설교통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7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1,000,000	(800,000)	(1,000,000)	(0)	(1,000,000)	1,000,000	1,000,000	0	
국 비									
도 비	1,000,000	(800,000)	(1,000,000)	0	(1,000,000)	1,000,000	1,000,000		
시군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30억이상 신규사업 사전협의
반영예정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7.10월	-	-	-	-	-	-	-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

(기준 : '17. 6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일 자		도직접	재배정	시군 보조	
계	1,000,000	0	0		0				
2015년	-	-	-	-	-	-			
2016년	-	-	-	-	-	-			
2017년	1,000,000	0	0	0	0	○			

○ '17년 추진 실적 : 해당없음

○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정상추진

- '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'17년 하반기(9월) 집행예정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교통국	택시정책과	택시서비스지원팀	김흥재 (8030-3610)	황재훈 (8030-3611)	김선영 (8008-3613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택시 경영·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체 및 개인택시지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 기여

2) 사업 근거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0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) 제3항
* 평가 결과 우수한 자에게 포상, 우수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,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
- 「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」 제6조(경영 및 서비스평가) 제3항

3) 사업 집행절차

- 인센티브 지원 계획 수립·통보
-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접수
- 인센티브 지원비 교부
- 사업 정산 실시 :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

4) 사업 내용

- 사업 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사업 량 : 우수 법인업체 30개, 시·군별 개인택시지부 10개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경기도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

- 지원기관 : 법인택시 업체(30개)
- 지원유형 : 사업비
- 예산과목 : 민간자본사업보조
- 지원근거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0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) 제3항 및 제50조제2항, 「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」 제6조제3항 및 제8조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제20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)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,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 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제50조(재정 지원)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<중간 생략>

6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

7.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설비의 설치 및 개선

8. 경제적·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·장비의 확충과 개선

9.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

<이하 생략>

「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」

제6조(경영 및 서비스평가)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**경영 및 서비스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**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제외한다.

<중간 생략>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**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게 포상 및 우수 인정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,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**

제8조(재정지원 사업)

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 다만,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·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
1.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[전문개정 2015.10.13.]
2. 지하철·버스·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을 위한 통합카드시스템
3. 택시승차대, 카드결제기, 영상기록장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·개선사업
4.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
5.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·통신료 지원 사업 [전문개정 2015.10.13.]
6. 복지회관 및 쉼터, 건강검진, 문화·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교육 및 연수 등 노사문화 정착 사업 [전문개정 2016.07.19.]
7. LPG(부탄) 택시연료를 경제적·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
8.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·장비(차량 및 카메라, 분석시스템 등) 구입 지원 [신설 2016.07.19.]
9. 택시노동조합연맹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 지원 [신설 2016.07.19.]
10. 제6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[신설 2016.07.19.]
11.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[신설 2016.07.19.]
1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재정 지원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
1.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양도·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
2.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(減車) 사업
3.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(이하 "택시"라 한다)의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"친환경 택시"라 한다)로의 대체 사업
4. **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·개선·운영 사업**
5.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고 (증감)
계			1,000,000	1,000,000	0
민간자본이전 (민간자본 사업보조)	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	○ 법인업체 : 3억원, 순위별 차등지급 - 순위별 차등지급 : 1위 2,000만원~30위 250만원	300,000	300,000	0
일반보상금 (기타보상금)	우수종사자 인센티브 지원	○ 법인업체 우수종사자 : 4억원 - 순위별 차등지급 : 15,000만원 - 종사자수 비례지원 : 25,000만원 ○ 개인택시지부 우수종사자 : 3억원 - 순위별 차등지급 : 3,000만원 (1위 700만원~10위 200만원) - 면허대수 비례지원 : 27,000만원	700,000	700,000	0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 : 해당없음

9) 주요 결산사항 : 해당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

- 택시 경영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(서울특별시)
 - 주 관 : 서울특별시
 - 사업 기간 : 2017.1~2017.12
 - 예 산 : 10억원(기타보상금)
 - 주요 내용 : 우수업체 운수종사자 현금(60%) 및 시설개선비(40%)
- 택시 경영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(대구광역시)
 - 주 관 : 대구광역시
 - 사업 기간 : 2017. 1 ~ 2017. 12
 - 예 산 : 2억원(기타보상금)
 - 주요 내용 : 우수종사자 복지 향상

11) 기타 보충자료 : 별첨

참 고

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

□ 개 요

○ 사업목적

-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업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택시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

○ 사업기간 : '18. 1월 ~ 12월

○ 지원대상 : '18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30개 업체 및 개인택시 10개 지부

○ 지원내용 : 우수업체 및 우수종사자 인센티브 지원

- 우수 업체 인센티브(3억) : 법인업체 시설·장비개선비
- 우수 종사자 인센티브(7억) : 종사자 복리·후생 증진 인센티브 부여
 - 법인업체 종사자(4억), 개인택시지부 종사자(3억)

□ 주요쟁점 및 문제점

- 택시 업계의 경영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택시산업 개선방안 마련의 평가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평가에 따른 대폭적인 인센티브 부여 필요

□ 연도별 인센티브 지원 현황

구분	지원기간 및 대상	사업비 (단위: 원)			세부 지원내역
		계	도비	자부담	
2009년	○ 지원기간 -2010. 9월~12월 ○ 지원대상 -법인택시 21개 업체	213,765,498	199,942,000	13,823,498	○ 운전원 근무복 ○ 차고지내 운동시설 구입·확충 ○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(비데, TV, 냉난방기 등) ○ 차량 시설 개선 (LED반차등, 하이패스, 무전기 등)
2010년	○ 지원기간 - 2011. 1월~7월 ○ 지원대상 -법인택시 31개 업체 -개인택시지부 10개	359,602,268	300,000,000	59,602,268	○ 운전원 근무복 ○ 차량 시설 개선 (사각지대 렌즈,SD카드,항균필터 등) ○ 차고지내 운동시설 구입·확충 ○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(사위실, 화장실, 냉난방기 등) ○ 기타(교육기자재,세차관련시설, 분실물보관 게시판 등)
2012년	○ 지원기간 -2013. 1월 ~ 6월 ○ 지원대상 -법인택시 31개 업체 -개인택시지부 10개	357,345,830	300,000,000	57,345,830	○ 운전원 근무복 ○ 차량 시설 개선 (사각지대 렌즈,SD카드,항균필터 등) ○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(사위실, 화장실, 냉난방기 등) ○ 기타(교육기자재,세차관련시설, 분실물보관 게시판 등)
2016년	○ 지원기간 - 2017. 9월 ~ 12월 ○ 지원대상 -법인택시 30개 업체 -개인택시지부 10개	1,000,000,000	1,000,000,000	-	※ 세부 지원계획 수립중 ○ 우수업체 시설장비개선비 지원 ○ 우수종사자 복리·후생 증진 인센티브 지원

III. 신규사업 설명서

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(자체/직접)	정책사업	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지원
	단위사업	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	기준보조율(%)	도 50 시군 50
	위원회명	건설교통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7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16,100,000	(0)	(0)	(0)	0	16,100,000	16,100,000		
국 비									
도 비	8,050,000		0	0		8,050,000	8,050,000		
시군비	8,050,000		0	0		8,050,000	8,050,000		
기 타								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30억이상 신규사업 사전협의
반영예정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대상
2017.10월	-	-	-	-	-		2017. 7월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: 2018년 신규 사업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교통국	굿모닝버스추진단	운영체계개선팀	임성만 (8030-3620)	천성수 (8030-3641)	조가영 (8030-3645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수도권 광역교통 입석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

2) 사업 근거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50조
-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

3) 사업 집행절차

- 재정지원 예산 산정 (시·군 50%, 도 50%) → 비용정산시스템을 통한 정산금 산출 (운송수입금 - 운송원가)
→ 재정지원금 신청 → 재정지원금 승인 및 지급 → 집행 보고

4) 사업 내용

- 사업 위치 : 경기도
- 사업 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사업 대상 : 직행좌석형(광역) 버스
- 사업 량 : 12개 단기 시행 시·군, 직행좌석버스 33개 노선
 - 인면허 보유 시군 : 7개 시(안산, 안양, 시흥, 파주, 김포, 포천, 양주)
 - 노선경유 시군 : 5개 시(부천, 의정부, 군포, 의왕, 과천)
- ※ 참여 의사 표명 23개 시·군 중 단기('17년말~) 시행 희망 12개 시·군 확정('17. 6월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경기도, 참여 시·군 공동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: 해당없음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 고 (증감)
계			16,100,000	0	16,100,000
민간이전 (운수업계보조금)	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	33개 노선	16,100,000	0	16,100,000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 : 해당없음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 : 해당없음

9) 주요 결산사항 : 해당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

● 버스 준공영제 국내 사업 현황

구분	서울특별시	대구광역시	부산광역시	광주광역시	대전광역시	인천광역시
준공영제 시행	2005년	2006년	2007년	2007년	2007년	2009년
'15 재정지원금	2,512억원	1,030억원	1,263억원	390억원	529억원	670억원

* 제주특별자치도 : '17.08 버스 준공영제 시행 예정